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97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6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2조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스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전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 다. 플레어시스템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8-1-1조 중 제20호를 제22호로 한다.

제8-1-2조 중 제20호를 제22호로 한다.

제10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한 연장 인정기준

제10-1-1조(2년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의 기준) 영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용기를 말한다.

1.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검사생략 확인신청서”가 제출된 용기
2.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생략 용기의 안전관리계획서”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되어 그 안전관리 방법 및 위해방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확인을 받은 용기.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검사생략 용기의 안전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1-2조(외국용기등의 인정기준 등) 영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이란 다음 표의 검사기관에서 해당 검사의 기준 이상을 충족한 것을 말한다.

공인검사기관	인정기준
DOT 인증기관	미국의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기준
EC(European Commission)에 등록된 공인검사기관(Notified Body)	유럽의 TPED(Transportable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기준
고압가스보안협회	일본의 고압가스보안법

제10-1-3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따로 정한다.

검사생략 용기의 안전관리계획서			
신 청 인	① 상호(성명)		② 연락처
	③ 소재지		
용기정보	④ 제조자		⑤ 제조국
	⑥ 제조기준		⑦ 검사기관
	⑧ 수입일		
사 용 자 또는 보관장소	⑨ 상호		⑩ 대표자
	⑪ 관리책임자		⑫ 연락처
	⑬ 소재지		
⑭ 검사생략 기간 연장사유			
⑮ 용기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용접용기 <input type="checkbox"/> 이음매 없는 용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⑯ 가스명 및 총전량 (별첨 가능)	가스명	용기의 용량	수량
		(kg, m ³)	개
		(kg, m ³)	개
⑰ 안전관리 방법 및 위해방지 방법 (별첨 가능)			
위 신청인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0-1-1조제2호 관련 2년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제출자 신청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서명 또는 날인) </div> </div>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검사기관)			

부 칙<제2022-97호, 2022.06.0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장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